

#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##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제 목 시설계약업무처리 부적정

관계기관 성석초등학교

내 용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3조(전기공사의제한 등)에 따라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수 없다.

그럼에도 성석초등학교에서는 2020.12.11. 수배전반 전기ACB교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, 전기공사업 면허 미보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.

### 【조치할 사항】

- ① 성석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1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

#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

##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

제 목 학교발전기금 운영 부적정

관계기관 성석초등학교

내 용

### 1. 발전기금 집행 절차 부적정

「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에 따르면 발전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사용 전에 반드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며, 다만 학생을 지정한 장학금과 목적(사용용도)이 명확한 기부금 중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전에 사용 가능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및 심의·의결을 해야 한다.

그런데도 성석초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에 기탁된 장학금(4,000,000원), 도서구입(5,000,000원), 2021학년도 장학금(1,200,000원)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운용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·의결하지 않고 내부위원회 선정 결과로만 집행한 사실이 있다.

### 2. 발전기금 집행계획 및 내역 보고 소홀
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4조 및 「경기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」에 따르면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매 분기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.

그런데도 성석초등학교에서는 2020~2022학년도 동안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 보고를 2020학년도 4분기, 2021학년도 2분기에 누락한 사실이 있다.

### 【조치할 사항】

- ① 성석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- ② 관련자 3명에게 ‘주의’ 처분합니다.